

「국내의 석면피해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전 형 배*

발표자의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석면소송의 문제점을 적확하게 지적하고 나아가 석면문제를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취지 또한 동감입니다. 그래서 발제문에 대해 특별히 보충하기 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청중과 발제문과 토론문을 읽게 될 독자들의 주위를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석면문제의 현실을 격식 차리지 않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I. 석면은 어디에 사용되나?

석면은 천연으로 산출되며, 주로 사문석군 광물의 변종인 온석면(溫石綿)으로 구성된 사문암을 채광 또는 채석하여 얻어지는 광물 섬유입니다. 석면섬유는 열과 불에 대한 저항력 이외에도 산과 염기에 대한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다루는 산업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석면섬유는 불연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되며, 산업적으로는 특히 브레이크 라이닝, 건축재료, 전기기기 및 열 전열물 제조에서 중요합니다. 불연성 때문에 방화복에도 사용되며, 극장용 커튼과 공공건물이 방화천장 같은 곳에도 사용됩니다.¹⁾ 열과 불에 대한 저항력이나 산과 염기에 대한 내구성이 필요한 제품이면 웬만하면 다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1) 인터넷 포털 다음 백과사전(<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2s0039a>) 참조.

II. 피해의 문제

석면을 직접 다루거나 영향을 받은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발제자가 지적하신대로 ‘비직업적 노출’은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루에서 수 백 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 불연제로 사용된 석면섬유의 노후나 제거로 인한 일반인의 피폭이 향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2008. 5. 16.~6. 29.까지 일산선과 과천선, 분당선 역사 33개 승강장의 석면 함유실태를 조사하여 보니 30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²⁾ 당시 조사는 이번 조사는 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역을 대상으로, 각 역사의 매표소나 승강장 천장과 벽에서 석면을 함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재를 중심으로 시료를 채취해 실시된 것이나 철도공사의 관리대상이 아닌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역사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00년경부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주로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과 업무상 이동을 하었는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서울에선 지하철역사 내부의 환경개선을 이유로 대규모로 공사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당시 저도 집중적인 석면가루 흡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 수 십 년 후 저가 관련 증상을 호소한다면 그 때 마신 석면가루가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인과관계의 입증인데, 집과 사무실의 이동경로, 이동시간, 업무상 이동 경로, 업무의 횟수, 환경개선공사가 해당 이동경로에 존재하는 역사에서 이뤄졌다는 사실, 그런 공사현장에서 석면가루의 피폭이 이

²⁾ 인터넷 판 YTN 뉴스(2008. 9. 30. 자).

뤄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배상 혹은 보상이 대상이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석면으로 인한 불법행위 소멸시효 배제, 입증책임 완화, 보상재원의 국가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Ⅲ. 석면문제대응을 위한 국가의 예비적 조치

석면으로 인한 폐암 등의 발생은 피폭 후 10년에서 30년이 지난 다음에야 생기고 설혹 폐암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석면으로 인한 것이지 입증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아마도 석면작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산재소송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스스로 잠재된 피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향후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떠오르는 생각으로 건강보험공단 내에 석면관련 질병부서를 설치하여 피폭의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관련 정기검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